

제 25-08호

2025. 09. 08

KOSI

# 중소기업 이슈<sup>n</sup> 포커스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책임작성

노민선 연구위원

(02-707-9843 / msnoh@kosi.re.kr)

KOSI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  
Korea SMEs & Startups Institute

※ KOSI 중소기업 이슈<sup>n</sup> 포커스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osi.re.kr](http://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3. 내일채움공제 현황 및 평가
4.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요 약

### <배경 및 목적>

- 청년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증가
- 폐업 상태인 자영업자는 많지만,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계획을 발표
- 본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및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며,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격차 확대
  - 중기 임금 비중(대기업 대비, '24) : 100~299인(77.0%) > 30~99인(67.9%) > 10~29인(63.9%) > 1~9인(49.4%)
  - 중기 임금 비중(대기업 대비) : 63.3%('20) → 61.1%('24) [2.2%p ↓]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며,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 소득 비중(20~29세=100) : 35~39세(147.1), 40~44세(154.3), 45~49(155.6), 50~54세(152.0)
  - 중기 소득 비중(대기업 대비, '24) : 20~29세(65.2%) > 30~34세(59.4%) > 40~44세(49.4%) > 50~54세(42.4%)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근속기간 1~5년 사이에 증가폭이 미미하며,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근속 기간 1~3년 미만에서 확대
  - 소득 비중(1년 미만=100) : 1~2년 미만(141.3), 2~3년 미만(149.3), 3~5년 미만(157.3)
  - 중기 소득 비중 증감(대기업 대비, '20~'23) : 근속 1~2년 미만(2.6%p ↓), 2~3년 미만(3.1%p ↓)

### < 내일채움공제 현황 및 평가 >

-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공제사업을 수행 중
  - (내일채움공제, '14.8~)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34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3년 이상 적립하고, 만기 시 1,224만원과 이자를 핵심인력에게 지급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24.10~)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예비)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12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796~3,980만원을 (예비)핵심인력에게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16.7~'23.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6~'22.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3.2~'23.12) 등 청년근로자 대상의 공제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
- 내일채움공제는 2025년 7월 기준 4만 1,552개사에서 11만 9,374명이 가입
  - 29인 이하 소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83.8%, 전체 가입인원의 62.8%를 차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54.0%, 전체 가입인원의 53.9%를 차지
-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공제사업은 정책 선호도가 높고, 공제가입 근로자의 근속기간, 1인당 매출액과 수익성은 미가입 근로자 대비 높게 나타남

### <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 '중소기업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
  - 중소기업에서 R&D,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와 '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를 도입
  - 중소기업 사업주와 전문인력이 1:1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 만기 시 노-사 적립금액의 절반(0.5)을 만기장려금으로 지급(노-사-정 협력모델)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동반성장 종합평가 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한 배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및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력 분야' 사업에 1차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체계 고도화
  - 신규 예산 편성, 마일리지 연동 강화, 핵심인력 전용사업 확대 등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 신설
  - 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

# 01 | 서론

## ◆ 청년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증가

-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sup>1)</sup>) 중소기업 : 5.0%(‘19) → 3.6%(‘23) / 벤처기업 : 2.1%(‘19) → 2.0%(‘23)
- (이직률<sup>2)</sup>) 중소기업 : 5.2%(‘19) → 5.4%(‘24) / 2024년 : 중소기업(5.4%) > 대기업(3.6%)

## ◆ 폐업 상태인 자영업자는 많지만,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

- (폐업률<sup>3)</sup>)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의 13.7%가 폐업 상태
- (중소기업 상용직 빈 일자리 수<sup>2)</sup>) 14.8만개(‘19) → 16.3만개(‘24)

## ◆ 이재명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계획을 발표

-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확충과 복지플랫폼·바우처 신설
- 청년층 자산형성 상품(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

표 1 중소기업 공제사업 관련 국정과제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과제 목표 및 주요 내용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 3 (협력·상생의 공정경제)	국정67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 기업환경 조성)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청년의 '참 관찮은 중소기업' 유입 촉진,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확충, 복지플랫폼·바우처 신설 →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층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전략 4 (인구위기 극복 대전환)	국정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목돈마련 지원상품 및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신설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뒷받침, 중소기업 근속 청년 등에게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자료 :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 ◆ 본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및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내일채움공제 신규사업 설계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3) 한국신용데이터,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통합 리포트, 2025.8.

## 02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 가. 분석개요

#### < 사업체 임금 >

##### ◆ 분석개요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지정통계(승인일자: 1968.04.18. / 승인번호: 제118002호)
- (내용) 상용근로자의 종사자 규모별·업종별 임금 수준

##### ◆ 용어의 정의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임금총액)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 < 개인별 소득 >

##### ◆ 분석개요

- (자료)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일자: 2012.04.23. / 승인번호: 제101074호)
- (내용) 임금근로일자리에서 하루 이상 일한 근로자의 연령별·근속기간별 소득(보수) 수준(12.31일 기준)

##### ◆ 용어의 정의

- (임금근로일자리) 기업체(사업체)에서 임금을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근로자(인적단위)가 점유한 고용위치
- (소득)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를 의미하며, 집계치는 세전 기준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매출액 규모에 따라 영리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

## 나. 사업체 임금<sup>4)</sup>

### < 규모별 >

####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남(격차 증가)

- 임금총액 비중(%) : 100 ~ 299인(77.0) > 30 ~ 99인(67.9) > 10 ~ 29인(63.9) > 1 ~ 9인(49.4)
- 특별급여 비중(%) : 100 ~ 299인(44.9) > 30 ~ 99인(28.6) > 10 ~ 29인(25.2) > 1 ~ 9인(11.3)

####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감소(격차 확대)

- 임금총액 비중 : 63.3%('20) → 61.1%('24) [2.2%p ↓]
- 특별급여 비중 : 25.4%('20) → 23.4%('24) [2.0%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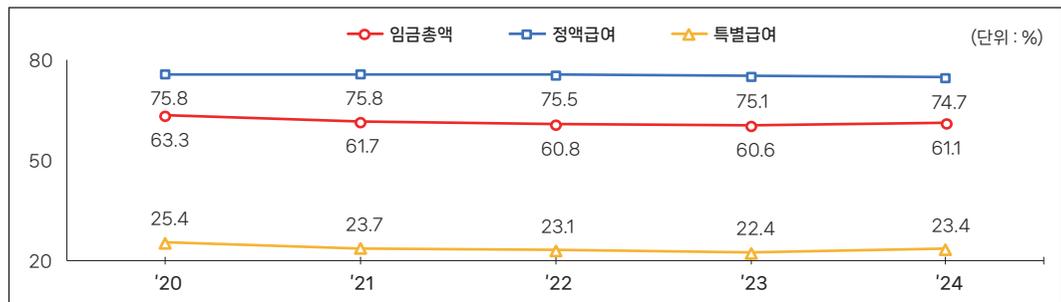
표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업종별, 2024)

(단위: 천원(%))

구 분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300인 미만	3,887(61.1)	3,349(74.7)	198(45.9)	340(23.4)
[1~9인]	[3,145(49.4)]	[2,924(65.2)]	[57(13.2)]	[164(11.3)]
[10~29인]	[4,066(63.9)]	[3,502(78.1)]	[198(45.9)]	[366(25.2)]
[30~99인]	[4,319(67.9)]	[3,593(80.1)]	[311(72.3)]	[415(28.6)]
[100~299인]	[4,900(77.0)]	[3,843(85.7)]	[406(94.4)]	[65.1(44.9)]
300인 이상	6,364(100)	4,483(100)	430(100)	1,451(100)

\* 주: 1) 상용근로자 기준이며, 수치는 반올림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비중을 의미함

그림 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비중



\* 주: 1) 상용근로자 기준이며, 수치는 반올림함  
2) 중소기업(300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서 대기업(300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나누어 계산

4)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의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업종별>

◆ 중소기업의 업종별 월평균 임금 수준은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초과급여는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임금총액(천원) : 금융·보험업(7,09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845), 정보통신업(4,817) 등의 순
- 정액급여(천원) : 금융·보험업(5,04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275), 정보통신업(4,158) 등의 순
- 초과급여(천원) : 제조업(383), 운수·창고업(328), 정보통신업(208) 등의 순
- 특별급여(천원) : 금융·보험업(1,9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71), 정보통신업(451) 등의 순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임금총액은 제조업, 초과급여는 건설업, 특별급여는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낮게 나타남(비중이 낮을수록 격차가 큼)

- 임금총액 비중(%) : 제조업(52.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53.4), 건설업(54.1) 등의 순
- 초과급여 비중(%) : 건설업(16.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32.5),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5.4) 등의 순
- 특별급여 비중(%) : 숙박·음식점업(7.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2.9), 제조업(14.7) 등의 순

표 3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업종별, 2024)

(단위: 천원(%))

구 분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전 체	3,887(61.1)	3,349(74.7)	198(45.9)	340(23.4)
제조업(A)	4,077(52.5)	3,359(71.7)	383(48.1)	335(14.7)
건설업(F)	4,038(54.1)	3,731(64.3)	115(16.4)	191(19.9)
도·소매업(G)	4,058(57.6)	3,569(65.6)	108(36.9)	380(28.9)
운수·창고업(H)	4,029(62.1)	3,281(75.3)	328(65.8)	420(25.8)
숙박·음식점업(I)	2,673(61.6)	2,468(80.3)	133(39.2)	72(7.8)
정보통신업(J)	4,817(65.4)	4,158(73.1)	208(51.9)	451(35.1)
금융·보험업(K)	7,091(80.7)	5,048(85.2)	135(64.6)	1,909(72.1)
부동산업(L)	3,214(89.2)	2,971(94.5)	77(70.0)	166(47.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	4,845(61.6)	4,275(76.5)	99(37.9)	471(23.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N)	3,061(111.9)	2,724(112.8)	166(94.5)	171(118.9)
교육서비스업(P)	3,585(83.2)	3,276(87.2)	70(240.4)	239(45.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Q)	2,956(53.4)	2,700(64.3)	140(32.5)	116(12.9)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R)	3,320(65.1)	2,942(74.3)	143(35.4)	235(31.9)

\* 주: 1) 상용근로자 기준이며, 수치는 반올림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대분류 기준이며,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을 의미함  
 3) 괄호 안의 수치는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비중을 의미함

## 다. 개인별 소득<sup>5)</sup>

###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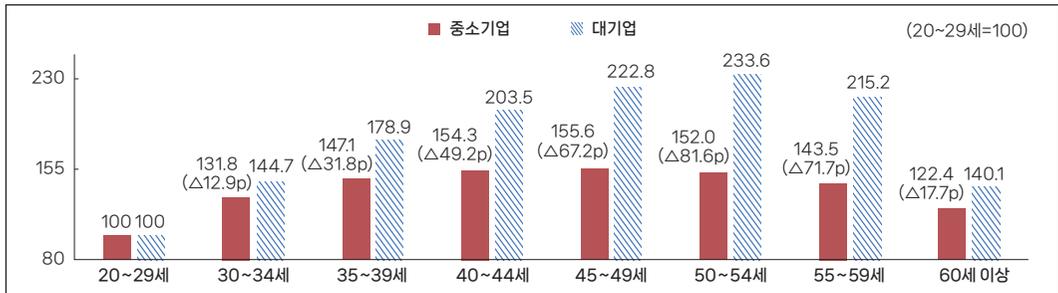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며, 동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비중 차이는 큰 폭으로 증가

- 소득 비중(20~29세=100) : 35~39세(147.1), 40~44세(154.3), 45~49세(155.6), 50~54세(152.0)
- 비중 차이(대-중소) : 35~39세(31.8p), 40~44세(49.2p), 45~49세(67.2p), 50~54세(81.6p)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격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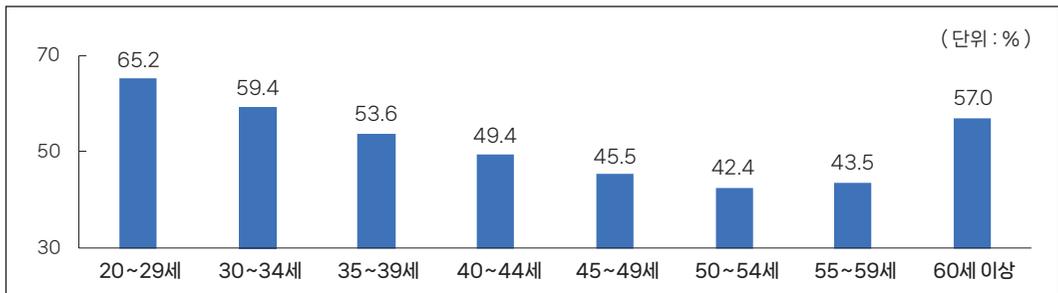
- 소득 비중(%) : 20~29세(65.2) > 30~34세(59.4) > 40~44세(49.4) > 50~54세(42.4)

그림 2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수준(연령별, 2023)



- \* 주: 1) 20~29세 연령을 100으로 한 평균소득 수준을 말하며, 괄호안의 수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 차이를 의미함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

그림 3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연령별, 2023)



- \* 주: 1)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나누어 계산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

5)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각연도의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 근속기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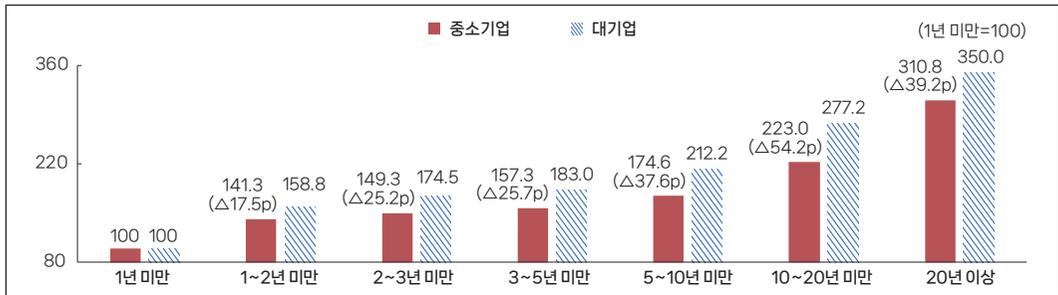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근속기간 1~5년 사이에 증가폭이 미미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비중 차이는 근속기간 20년까지 계속 증가

- 소득 비중(1년 미만=100) : 1~2년 미만(141.3), 2~3년 미만(149.3), 3~5년 미만(157.3)
- 비중 차이(대-중소) : 1~2년(17.5p), 2~3년(25.2p), 3~5년(25.7p), 5~10년(37.6p), 10~20년(54.2p)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은 증가했지만(격차 완화), 근속기간 1~3년 미만은 감소(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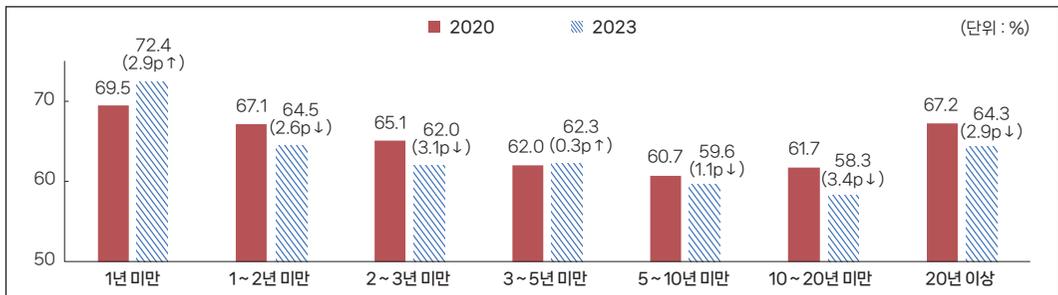
- 소득 비중('20~'23) : 근속 1년 미만(2.9%p ↑), 1~2년 미만(2.6%p ↓), 2~3년 미만(3.1%p ↓)

그림 4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수준(근속기간별, 2023)



\* 주: 1) 근속기간 1년 미만을 100으로 한 소득수준을 말하며, 괄호안의 수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 차이를 의미함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

그림 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근속기간별)



\* 주: 1)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나누어 계산했으며, 괄호안의 수치는 2020년 대비 증가분을 의미함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

## 03 | 내일채움공제 현황 및 평가

### 가. 법적 근거 및 추진 경과

#### < 법적 근거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법률 제12308호(개정 : '14.01.21. / 시행 : '14.07.22.)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정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설치,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 용도, 공제사업의 운영 규정 신설
- 법률 제13864호(개정 : '16.01.27. / 시행 : '16.01.27.)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보상기금 출연 규정 신설
- 법률 제15925호(개정 : '18.12.11. / 시행 : '19.06.01.)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구 의무 규정 신설

##### ◆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제5의2호)
-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제6호)

#####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법 제12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법 제5장의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제35조의2)
-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제35조의3) : 중소기업 부담 기여금, 근로자의 공제 납입금, 수익금, 출연금 등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35조의4)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제35조의5) : 성과보상공제사업, 교육사업(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 복지사업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사업을 운영(제35조의6)

< 추진 경과 >

◆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공제사업을 수행 중

- 기금명칭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공제상품 : 내일채움공제('14.8.~),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24.10~)
- 세제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는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15.3~ , 신고시점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는 수령액의 50%(청년은 90%)를 소득세에서 감면('16.1~)  
 ※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모두 해당(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2호)

◆ 청년근로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까지만 시행하고 모두 종료된 상태

- 청년내일채움공제('16.7~'23.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8.6~'22.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3.2~'23.12)

표 4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추진 경과

구 분	시행일자	조치사항	주요 내용
1	'14.07.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설치 등
2	'14.08.2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내일채움공제 상품 출시
3	'15.03.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추가
4	'16.01.0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신설
5	'16.01.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 마련
6	'16.07.01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16.4) 후속 조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7	'18.06.01	'청년일자리대책('18.3) 후속 조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신설(~'21.12)
8	'19.06.0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기금명칭 변경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9	'22.01.01	'청년특별대책('21.8) 후속 조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12)
10	'23.02.0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 후속 조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설
11	'24.01.01	청년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폐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규가입 중단
12	'24.10.22	'중소기업 도약전략('24.4) 후속 조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설

\* 주 : 관련 법령, 정부 대책, 예산서,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대상 공제사업

### < 사업 개요 >

#### ◆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34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3년 이상 적립하고, 만기 시 1,224만원과 이자를 핵심인력에게 지급
- 월 적립금액은 「근로자 1 : 중소기업 2 이상」의 비율로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서 결정하며, 근로자는 월 11만원, 중소기업은 월 23만원 이상 납입

#### ※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 대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여 월 적립 금액을 「근로자 1 : 중소기업 1 이상 : 협력기관 1 이상」의 비율로 납입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예비)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12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796~3,980만원\*을 (예비)핵심인력에게 지급  
\*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2.5%에 우대금리 2%를 적용하여 최대 4.5%를 적용('25.3분기 기준)
- 월 적립금액은 「근로자 1 : 중소기업 0.2」의 비율로 결정하며, 근로자는 월 10~50만원, 중소기업은 월 2~10만원 납입

표 5 중소기업 핵심인력 대상 공제사업

구 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시행일자		'14.08.21		'24.10.22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인력	핵심인력		핵심인력 또는 예비 핵심인력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납입 금액	매칭비율	일 반	근로자(1) : 중소기업(2이상)	근로자(1) : 중소기업(0.2)
		상생형	근로자(1) : 중소기업(1이상) : 협력기관(1이상)	
	월 납입액	34만원 이상(근로자+중소기업(+협력기관))		근로자(10~50만원), 중소기업(2~10만원)
수령금액		1,224만원+@		796~3,980만원(적용금리 4.5% 기준)
가입현황('25.7)		41,552개사, 119,374명		6,897개사, 34,963명

\* 주: 관련 법령, 공고문, 사업 현황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운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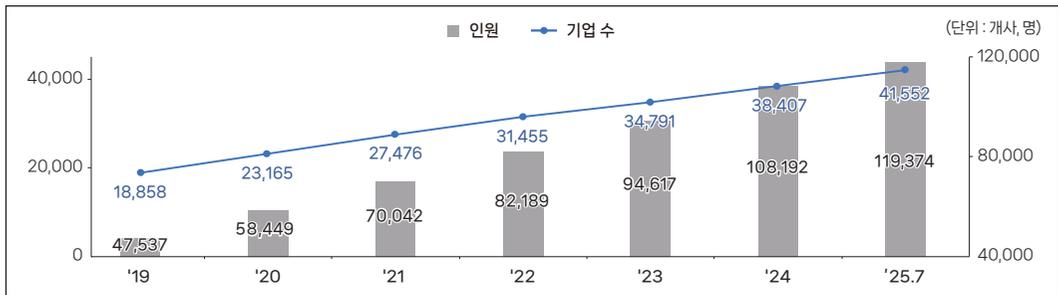
◆ 내일채움공제는 2025년 7월 기준 4만 1,552개사에서 11만 9,374명이 가입

- 2014년(상품 출시) 대비 기업 수는 51.9배(801→41,552), 가입인원 수는 56.8배(2,100→119,374) 수준
- 2019년(코로나19 이전) 대비 기업 수는 120.3%(22,694개), 가입인원 수는 151.1%(71,837명) 증가

◆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소기업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9인 이하 소기업이 전체 가입기업의 83.8%(34,823개사), 전체 가입인원의 62.8%(74,942명)를 차지
  - 비수도권 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54.0%(22,433개사)\*, 전체 가입인원의 53.9%(64,374명)\*\*를 차지
- \* 전체 중소기업 수의 비수도권 비중(47.4%<sup>6)</sup>) 대비 6.6%p 높은 수준  
 \*\*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비수도권 비중(45.5%<sup>6)</sup>) 대비 8.4%p 높은 수준

그림 6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추이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2025.8.

그림 7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규모별,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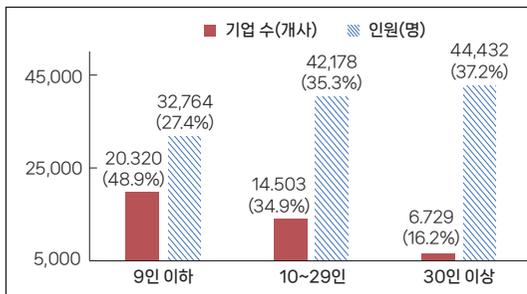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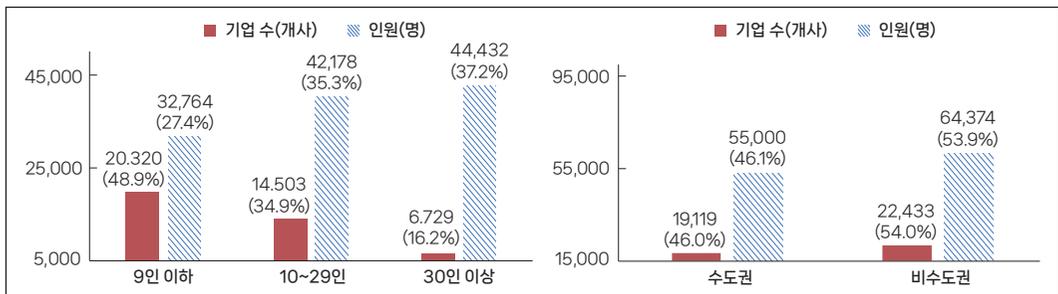


그림 8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지역별, '25.7)



\* 주 : 수치는 반올림함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2025.8.

6)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5.8.

## 다. 중소기업 청년 대상 공제사업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 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중소기업은 월 20만원 이상, 청년 근로자는 월 12만원 이상을 납입하고, 정부는 3년간 7회 분할로 최대 1,080만원(정액)을 적립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49인 이하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소득 36백만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 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공제금을 3년 간 각각 600만원씩 적립하고, 만기 시 1,80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5~49인 중소기업, 취업한 지 6개월 미만인 연소득 36백만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 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공제금을 2년 간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고, 만기 시 1,20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표 6 중소기업 청년 대상 공제사업

구 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 반	플 러 스	
시행기간		'18.06.01.~'22.12.31	'23.02.02.~'23.12.31	'16.07.01.~'23.12.31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기 업	중소·중견기업	49인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건설업)	5~49인 중소기업 (제조업 또는 건설업)
	인 력	만15~34세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만15~34세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만15~34세 청년 (6개월 미만 재직 +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가입기간		5년	3년	2년
납입 금액	매칭비율	근로자(0.24) : 중소기업 (0.4) : 정부(0.36)	근로자(1) : 중소기업(1) : 정부(1)	
	총 납입액 (만원)	근로자(720) + 중소기업 (1,200) + 정부(1,080)	근로자(600) + 중소기업(600) + 정부(600)	근로자(400) + 중소기업(400) + 정부(400)
수령금액		3,000만원 + @	1,800만원 + @	1,200만원 + @
가입 현황('23.12)		52,922개사 / 156,869명	3,773개사 / 5,465명	128,587개사 / 580,925명

\* 주: 관련 법령, 공고문, 사업 현황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사업 종료시점 기준)

## 라. 중소기업 공제사업 평가

### < 노민선 외(2021)<sup>7)</sup>>

#### ◆ 평가자료

- 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 대상의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허용오차  $\pm 5.66\%p$  이내)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학·연·관 전문가 15명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 실시

#### ◆ 평가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선된 형태의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
-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를 수행

#### ◆ 평가결과

- 정책 전문가들은 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사업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지속유지가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군 중 가장 폭넓은 지지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비수도권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2)<sup>8)</sup>>

#### ◆ 분석자료 및 방법

- 공제 가입기업은 KED기업정보, 미가입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부 DB를 활용하여 분석
- 공제 가입인력과 미가입인력은 한국고용정보원 DB를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추출하여 분석

#### ◆ 분석결과

- (내일채움공제) 근속기간은 공제가입 근로자(52.8개월)가 미가입 근로자(19.2개월) 대비 2.74배 높고, 1인당 매출액과 수익성은 공제가입 근로자(352백만원, 4.2%)가 미가입 근로자(123백만원, 2.5%) 대비 각각 186%, 1.7%p 높게 나타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근속기간은 공제가입 근로자(52.1개월)가 미가입 근로자(18.0개월) 대비 2.9배 높고, 1인당 매출액과 수익성은 공제가입 근로자(349백만원, 4.8%)가 미가입 근로자(123백만원, 2.5%) 대비 각각 184%, 2.3%p 높게 나타남

7) 노민선 외,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일자리 분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 2022.

# 04 |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 가. '중소기업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

### ◆ 시사점 및 이슈

-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p.8)
- 대-중소기업 간 소득격차('20~'23)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은 완화, 1~3년 미만은 확대(p.9)
-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수는 2023년부터 감소하고, 2024년에는 감소폭이 증가(노민선, '25)
- 중소기업의 75.1%는 AI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41.6%는 AI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sup>9)</sup>
- 중소기업의 46.7%는 최근 3년간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이 이직하여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69.7%가 2회 이상 피해<sup>9)</sup>

### ◆ 정책과제

- 중소기업에서 R&D, 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와 '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를 도입
- 중소기업 사업주와 전문인력이 1:1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 만기 시 노-사 적립금액의 절반(0.5)을 만기장려금으로 지급(노-사-정 협력모델)
- 자격요건은 업무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근속기간(1년)을 포함하고,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격차 완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소득 상한선(48~60백만원)을 설정
- 일반 전문인력 공제는 공제사업 참여 수요가 큰 '비수도권 소재 29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표 7 '중소기업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 방안

구 분		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중소기업 / 만15~34세 청년	중소기업(비수도권, 29인 이하) / 제한 없음
지원 자격	근속 / 급여	1년 이상 / 연소득 48백만원 이하	1년 이상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직무 / 학위	R&D·AI 직무 종사 또는 석·박사 학위 소지	R&D·AI 직무 종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
가입기간		3년	3년
납입 금액	매칭비율	근로자(1) : 중소기업(1) : 정부(0.5)	근로자(1) : 중소기업(1) : 정부(0.5)
	총 납입액 (상한)	노·사(월 20만원, 총 720만원) + 정(만기장려금 360만원, 이자 포함)	노·사(월 30만원, 총 1,080만원) + 정(만기장려금 540만원, 이자 포함)
수령금액		1,800만원	최대 2,700만원

9)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8.5.(화) ~ 8.11(월)까지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 시사점 및 이슈

-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p.8)
- 중소기업의 50%가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이며, 이들 기업 매출액의 79.9%가 위탁기업으로부터 발생(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24)
-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에 따르면, 협력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상생형 내일채움공제'의 대기업 지원인원 수는 최근 10년간('15.1~'25.6) 885명에 불과

### ◆ 정책과제

- 동반성장 종합평가(동반성장위원회) 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한 배점 확대
  - 협력사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 (현행) 1점 → (개선) 2점
  - 인력개발 및 교류 지원 실적(장기재직 지원의 상위 지표) : (현행) 최대 3점 → (개선) 최대 4점
  - 상생협력 기금 출연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 (현행) 0.5점 → (개선) 1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법 제8조의3) : (현행) 10% → (개선) 20%
  - 상생협력 기금 출연비용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법 제132조)
  - \* 정책목적 상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과세 표준의 일정 비율(7%(중소기업)~17%(1,000억원 초과)) 이상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다.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

### ◆ 시사점 및 이슈

-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하고 대기업 대비 높은 수준(p.4)
-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수는 2023년부터 감소하고, 2024년에는 감소폭이 증가(노민선, '25)

### ◆ 정책과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및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력 분야' 지원사업에 1차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체계 고도화

### ◆ 시사점 및 이슈

- 상여금, 성과급 등의 특별급여는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특별급여 격차는 정액급여나 초과급여 격차 대비 크게 나타남(p.6)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43.2%('20) → 34.8%('23)로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업종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sup>10)</sup>
- 2024년부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사업 폐지(사업 예산 미반영)

### ◆ 정책과제<sup>11)</sup>

-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활성화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사업 예산 신규 편성(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포함)
  - 복지 플랫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적합한 마일리지는 네이버페이 등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내용채움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 전용 사업 확대(여행 및 휴가, AI 활용 연수, 자녀교육 지원 등)
  - 복지 플랫폼과 대기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물품 구매 시 AS 기간을 타 쇼핑몰보다 길게 설정
- 중소기업 복지시설 바우처 신설
  -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매칭(노-사-정 협력모델)
  -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등 열악한 기업 중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재직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 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
  - 해당 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복지 플랫폼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누리상품권 구입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차별화
  - 카드 발급 대상에 중소기업 재직기간(예: 3년)을 추가하고, 연회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10)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연도'의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11) '노민선 외,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2023'를 바탕으로 보완·발전시킨 것임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각연도a),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각연도b), 「사업체노동력조사」.

국정기획위원회(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노민선(2025),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 KOSI 중소기업 이슈<sup>n</sup> 포커스, 제25-02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외(2021), 「중소기업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일자리 분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외(2023),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2025),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2024), 「2023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2),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5),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2025년 7월말 기준)」.

통계청(각연도), 「사회조사」.

통계청(각연도), 「일자리행정통계」.

한국신용데이터(2025),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 중소기업 이슈<sup>n</sup> 포커스

---

**발행인** 조주현

**편집인** 이동주

**발행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70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쇄처** 디플러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